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GS SHOP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기준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의 TV홈쇼핑 방송 및 상품판매형 데이터 방송(이하, 통칭하여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약정을 체결할 시 협력사가 GS SHOP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GS SHOP과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 SHOP 임직원이 준수하고 시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명시한다.
- ② GS SHOP 임직원은 TV홈쇼핑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상담할 시 이 기준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 ① GS SHOP 임직원은 이 기준 외에도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하 통칭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라 함)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이 기준은 GS SHOP의 투명거래시스템(<http://withgs.gsshop.co.kr>)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개별 입점 상담 시에도 협력사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GS SHOP은 신규 및 기존 협력사 교육을 통하여 해당 기준을 지속 고지 및 상호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상품 및 협력사의 선정)

제3조 (상품 및 협력사의 선정 등 절차)

- ① 상품 및 협력사의 선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제안 받은 상품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상품(협력사)을 선정한다.
- ②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거래 조건의 결정)

제4조 (판매수수료 결정 등 절차)

- ① 상품 판매수수료는 협력사와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등 절차)

- ① 판매촉진행사는 협력사와 사전에 상호 합의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진행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 ②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 (방송제작비 분담 등 절차)

- ① 상품 판매 방송의 제작비는 GS SHOP이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력사의 요청에 의한 판매전문가, 모델, 상품소개 동영상 등을 추가할

경우 사전 합의를 통해 소요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장 (공정 경쟁 및 공정 거래)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고, 협력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어떤 부당한 강요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른다.
 1. 서면계약체결 의무
 2.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3. 상품판매대금 지급 의무
 4. 부당한 상품 수령 거부, 지체 금지
 5. 부당한 상품 반품 금지
 6.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금지
 7.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8.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9.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 수령 금지
 10. 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 제공의 금지
- ② 제1항 5호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8호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 배제)

- ① 협력사 임직원 등이 GS SHOP 임직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 GS SHOP은 관련 임직원이 해당 협력사의 상품 선정 및 거래 조건 결정 절차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 ② 위 1항의 이해관계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민법 제777조에 의거한 친족
 - 가. 8촌 이내의 혈족
 - 나. 4촌 이내의 인척 (인척의 범위는 민법 제769조를 따름)
 - 다. 배우자
 - 2. GS SHOP 근무 이력이 있는 임직원 등 기존 퇴사자
 - 3. 계열사(GS리테일 등) 관계자
- ③ 위 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임직원 등과 이해 관계 있는 임직원이 협력사의 상품 선정 및 거래 조건 결정 절차 등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련 임직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상품 선정 및 거래 조건을 재검토한다.

제9조 (협력사의 독점 방지)

- ① GS SHOP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제조사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조사가 물류, A/S 접수 및 처리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납품 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대행할 대행 협력사를 통하여 입점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후단과 관련하여, GS SHOP은 특정 대행 협력사가 납품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상품에 대해 복수의 대행 협력사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본 기준에 입각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협력사를 선정한다.

제5장 (거래의 종료 등 퇴점 기준)

제10조 (협력사와의 거래 종료)

GS SHOP은 협력사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사에 거래 중단 및 종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GS SHOP은 해당 기준을 투명거래시스템 및 협력사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사와 공유해야 한다.

- 1. 원산지표기오류
- 2. 품질/광고 심의 관련 고의적인 허위서류 제출
- 3. 고의적인 허위/과장광고
- 4. 고의적인 허위주문
- 5. 기타 협력사와의 거래기본계약서 등에서 합의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사유의 발생

제11조 (거래 종료 절차)

- ① GS SHOP이 협력사와의 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에 종료일자와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 ② 협력사와의 거래 종료 사유가 협력사의 법령, 이 기준 또는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협력사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GS SHOP은 거래 종료에 따른 후속 절차(대금 정산, 상품 반환, 협력사 자료의 반환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장 (분쟁의 해결 및 제재)

제12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 ① 협력사는 GS SHOP 임직원이 이 기준 및 별첨 지침을 위반하거나 GS SHOP과의 거래 중 불공정한 처우 등으로 인해 불만이 발생한 경우, GS SHOP 웹사이트 또는 투명거래시스템의 레드휘슬 헬프라인, 윤리경영 핫라인, CEO에게 말한다 등의 채널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 ② GS SHOP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GS SHOP의 감사업무 담당부서, 컴플라이언스업무 담당부서, 대외협력업무 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의 실사 및 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협력사에 조사된 사실관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협력사 피해 구제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③ GS SHOP은 본 조에 따라 협력사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협력사 및 협력사 관계자의 정보와 인적 사항 등을 비밀 정보로 보호하고 협력사가 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거나 거래 중단 등의 보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 중 발생한 협력사의 민원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제재)

- ① GS SHOP의 감사업무 담당부서, 컴플라이언스업무 담당부서, 대외협력업무 담당부서 등은 협력사의 신고를 통해 또는 직권으로 GS SHOP 임직원이 이 기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윤리규범 실천지침, 기타 사규 등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임직원의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야 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② GS SHOP 임직원의 위반 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해당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안인 경우 GS SHOP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해당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별첨세칙

- 지침1. 거래조건 결정 기준과 절차
- 지침2. 판매촉진행사 진행 기준과 절차
- 지침3. 방송제작비 등 분담 기준과 절차
- 지침4. 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 기준과 절차
- 지침5.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
- 지침6. 홈쇼핑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 준수 기준

부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기준은 2016. 05. 09일 제정. 시행한다.
- ② 이 기준은 2017. 01. 01일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기준은 2018. 08. 02일 개정. 시행한다.

거래조건 결정 기준과 절차 (지침)

GS SHOP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지침은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서 정한 사항 중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협력사가 GS SHOP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과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래조건 결정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 ② GS SHOP 임직원은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상담할 시 이 지침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 ① GS SHOP 임직원은 이 지침 외에도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하 통칭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라 함)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 지침은 GS SHOP의 투명거래시스템(<http://withgs.gsshop.co.kr>)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개별 입점 상담 시에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GS SHOP은 매월 2회 신규 및 기존 협력사교육을 통하여 해당 기준을 지속 고지 및 상호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 ④ 동종의 상품군에서는 협력사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등을 포함한 어떠한 거래조건의 차별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판매수수료 등 거래 조건 결정 지침)

제3조 (협의 절차)

- 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제안 받은 상품에 대해 "상품선정 및 방송 편성 기준과 절차"에 의해 GS SHOP의 방송을 위해 상품을 선정한다.
- ② 제1항을 통해 부합된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안전(QA)담당부서를 통해 상품군별 정해진 지침에 의거한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
- ③ 품질 검사 합격 후 협력사와 상품구성, 판매가를 포함한 판매수수료, 공급수량 등 방송 대상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④ 방송 10~5일전 협력사와 MD, PD가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판매 수수료, 공급수량 등을 협의해야 한다.
- ⑤ 방송 5일 전까지 협력사와 MD, PD가 모여 방송진행 컨셉을 협의하고, 최종 판매수수료, 공급수량 등 거래 조건을 확정한다.
- ⑥ 최종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전결규정에 의거하여 보고하고 최종 결정한다.
 - 1. 전결권자 : 부문장, 담당팀장(결재)
- ⑦ 합리적으로 산정된 판매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일방에 의해 결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결정된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4조 (계약 체결 절차)

- ① GS SHOP은 협력사가 GS SHOP과의 거래 규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GS SHOP의 상품 품질 검사가 완료되기 전 또는 GS SHOP과 방송일정 등의 세부 거래 조건이 최종 합의되기 전이라도 협

력사와 '판매계획 사전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해당 합의서에는 GS SHOP의 우수탁 판매 수량 또는 직매입 수량, 최초 방송판매가의 범위, 판매수수료율의 범위, 상품 매입 가격, 협력사의 월별 물량 공급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상호간에 최종 합의된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 등은 전자계약 형태인 '방송조건 합의서'로 체결하여 SCM(투명거래시스템 : With-net)으로 교부한다. 교부시점은 거래조건이 확정된 즉시 이행해야 하되, 방송일 기준 3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단,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 협력사와 합의되어야 하며 변경 교부하는 경우에도 즉시 협력사에 변경 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의 내용에는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위탁 판매수량, 거래가격, 거래기간,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판촉비용의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반품조건,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 2. 판매방송일정, 방송제작, 상품전문가, 모델 등의 출연여부, 일정 및 출연비용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소비자의 주문 및 반품상품에 대한 배송, 소비자의 구매취소 및 반품상품의 처리조건 등
- ④ 계약 체결 전이라도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이행 절차)

- ① GS SHOP은 협력사의 계약 합의 여부를 확인한 후 방송을 진행한다.
- ② 방송 후 계약 내용대로 대금정산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MD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대금정산이 이행되었을 경우에

는 해당 MD는 지체 없이 협력사에 통지하고 계약 내용대로 수정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에 따른 협력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즉시 손해 배상해야 한다.

- ③ GS SHOP은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율 및 거래조건을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거나 방송 중 변경하지 않는다.
- ④ GS SHOP은 협력사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각종 명목의 수수료나 경제적 불이익을 협력사에게 일절 부담시키지 않는다.

제6조 (판매수수료 결정 기준)

- ① GS SHOP은 협력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수수료를 협의한다.
 - 1. 품질분석
 - 2. 유사상품(군)의 평균 판매수수료율
 - 3. 협력사의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입지여건
 - 4. 예상 판매액 및 매출 기여도
 - 5. A/S 및 배송 등 관련 비용(설치상품인 경우 설치비용 등)
 - 6. 협력사의 재무 건전성
 - 7. 브랜드 인지도
 - 8. 시장성
 - 9.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 10. 기타 상품의 특성에 따른 고려 사항
- ② 판매수수료는 협력사와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산정되어야 한다.
- ③ 공정거래협약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해당 상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협력사의 이익 등을 우선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제조사 및 유통업체가 공급하는 상품
- 2. 장애인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 3. 농축산어민이 최종 생산자이거나 농축산어민이 직접 공급하는 상품
- 4. 기타 소외계층이 공급하거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제3장 (정액수수료 등 결정)

제7조 (정액수수료)

- ① 정액수수료라 함은 방송법 시행령 별표2의 3에 정한 바와 같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상품 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과 그 외의 수익배분방식을 혼합한 수익배분방식을 포함)을 말한다.
- ② 정액수수료를 적용하는 상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재고소진 목적을 위한 상품 판매
 - 2. 신상품의 시장 반응 점검을 목적으로 한 상품 판매
 - 3. 판로확보 및 재고관리의 안정성 유지, 홍보/판촉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상품 판매
 - 4. 기타의 사유로 협력사가 희망하는 상품 판매
- ③ 협력사와 사전 합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액수수료 방송을 운영한다.

제8조 (정액수수료 편성 시간과 비율)

- ① 상품의 편성 시간은 생방송 시간대를 원칙으로 협력사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 전체 상품에 대한 상품의 편성 비율은 희망 협력사의 수요, 시장 상황 및

운영전략 등에 따라 최소화 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제9조 (중소기업의 정액수수료로 인한 피해방지 방안)

- ① GS SHOP은 전체시간대의 과중한 정액수수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수료 분담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단, 다음 각 호의 방송은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여행, 렌탈, 핸드폰 등 소개 및 광고가 목적인 방송
 - 2. 전년도 1000분 이상(연 16.7회 방송) 편성한 상품의 방송
 - 3. 협력사의 요청에 따른 자발적 광고 목적의 방송
 -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 등이 별도로 제시하는 가이드 등이 있는 경우

제4장 (기타)

제10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협력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거래 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GS SHOP은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

GS SHOP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지침은 2016. 05. 09일 제정. 시행한다.
- ② 이 지침은 2017. 01. 01일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지침은 2018. 08. 02일 개정. 시행한다.

판매촉진행사 진행 기준과 절차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지침은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서 정한 사항 중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협력사가 GS SHOP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과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매촉진행사 진행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 ② GS SHOP 임직원은 TV홈쇼핑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상담할 시 이 기준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 ① GS SHOP 임직원은 이 지침 외에도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하 통칭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라 함)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 지침은 GS SHOP의 투명거래시스템(<http://withgs.gsshop.co.kr>)의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개별 입점 상담 시에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GS SHOP은 매월 2회 신규 및 기존 협력사교육을 통하여 해당 기준을 지속 고지 및 상호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 ④ GS SHOP은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장 (판매촉진행사 등 진행 절차)

제3조 (협의 절차)

- 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제안 받은 상품에 대해 “상품선정 및 방송편성 기준과 절차”에 의해 GS SHOP의 방송을 위해 상품을 선정한다.
- ② 제1항을 통해 부합된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안전(QA)담당부서를 통해 상품군별 정해진 지침에 의거한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
- ③ 품질 검사 합격 후 협력사와 상품구성, 판매가를 포함한 판매수수료, 공급수량 등 방송 대상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④ 방송 10~5일전 협력사와 MD, PD가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판매촉진행사를 포함한 판매수수료, 공급수량 등을 협의해야 한다.
- ⑤ 방송 5일 전까지 협력사와 MD, PD가 모여 방송진행 컨셉을 협의하고, 최종 판매촉진행사, 판매수수료, 공급수량 등 거래 조건을 확정한다.
- ⑥ 최종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전결규정에 의거하여 보고하고 최종 결정한다.
 - 1. 전결권자 : 부문장, 담당팀장(결재)
- ⑦ 합리적으로 산정된 판매촉진행사 등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일방에 의해 결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결정된 판매촉진행사 등 거래조건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4조 (계약 체결 절차)

- ① 상호간에 최종 합의된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 등은 전자계약 형태인 ‘판매촉진(ARS할인 등) 부담 합의서’로 체결하여 SCM(투명거래시스템 : With-net)으로 교부한다. 교부시점은 거래조건이 확정된 즉시 이행해야

- 하되, 방송일 기준 3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단,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 협력사와 합의되어야 하며 변경 교부하는 경우에도 즉시 협력사에 변경 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내용에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내용, 기간, 비용의 부담 비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계약 체결 전이라도 상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이행 절차)

- ① GS SHOP은 협력사와 판매촉진(ARS할인 등) 부담 합의서 합의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 ② 판매촉진 행사 후 계약 내용대로 판매촉진 행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MD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판매촉진 행사가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MD는 지체 없이 협력사에 통지하고 협력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력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즉시 손해 배상해야 한다.
- ③ GS SHOP은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촉진행사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거나 방송 중 변경하지 않는다.
- ④ GS SHOP은 협력사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각종 명목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협력사에게 일절 부담시키지 않는다.

제6조 (비용 부담 결정 기준)

- ① 협력사와 협의하는 해당 MD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 비용을 결정한다.

1. 협력사와 GS SHOP이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협력사와 GS SHOP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력사와 GS SHOP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하고 협력사의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협력사가 GS SHOP에 요청하여 다른 협력사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GS SHOP은 협력사와 상호 합의하여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판매촉진비용의 부담비율 중 ARS비용 항목은 협력사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협력사와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비율을 결정 한다.

제3장 (기타)

제7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협력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거래 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GS SHOP은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재)

GS SHOP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지침은 2016. 05. 09일 제정. 시행한다.
- ② 이 지침은 2017. 01. 01일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지침은 2018. 08. 02일 개정. 시행한다.

방송제작비 등 분담 기준과 절차 (지침)

GS SHOP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지침은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서 정한 사항 중 방송제작비 등과 관련하여 협력사가 GS SHOP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과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제작비 등 방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 ② GS SHOP 임직원은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상담할 시 이 지침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 ① GS SHOP 임직원은 이 지침 외에도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하 통칭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라 함)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 지침은 GS SHOP의 투명거래시스템(<http://withgs.gsshop.co.kr>)의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개별 입점 상담 시에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GS SHOP은 매월 2회 신규 및 기존 협력사교육을 통하여 해당 기준을 지속 고지 및 상호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 ④ GS SHOP은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방송 준비를 하여 판매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 제작비 등 결정 절차)

제3조 (협의 절차 및 방송 제작비 등 분담 기준)

- ① GS SHOP은 협력사와 판매 방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품에 대하여 협력사와 사전에 방송 내용 및 구성을 협의한 후에 방송을 제작 및 진행한다. 이 때 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GS SHOP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GS SHOP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협력사에 대하여 방송의 사전 제작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방송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협력사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 유지 및 제고, 홈쇼핑 방송을 통한 광고 효과 증진, 매출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사가 섭외한 판매전문가, 보조출연자(유명인사, 상품전문가, 모델), 방청객(이하 “판매전문가 등”이라고 한다)의 출연, 협력사가 홈쇼핑 방송을 위해 별도로 제작 또는 보유한 사전제작영상물의 사용(GS SHOP의 방송에 적합하게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GS SHOP이 준비한 방송세트(무대장치·설비 등)의 추가 또는 변경, 협력사가 준비 또는 지참한 소품의 사용 등을 GS SHOP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GS SHOP은 협력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방송 제작 시 협력사의 요청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 ④ GS SHOP이 방송 제작 및 진행 시 위 2항에 따른 협력사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5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제작영상물의 제작비 분담 기준)

- ① GS SHOP이 판매 방송을 위해 영상물을 사전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 비용은 원칙적으로 GS SHOP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② GS SHOP은 협력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사가 보유 또는 제작한 사전

제작영상물을 제공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GS SHOP과 협력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GS SHOP의 방송 상품이 협력사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으로 해당 직매입 상품의 방송에서 협력사가 제공하는 사전제작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 1. 협력사의 공급상품이 라이선스 상품(GS가 협력사에 라이선싱한 상표권을 사용하여 제작한 상품)인 경우 : 방송 프로그램당 20만원
 - 2. 협력사의 공급상품이 위 1호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품인 경우 : 방송 프로그램당 10만원
 - 3.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된 협력사 사전제작영상물의 수가 2개 이상 이더라도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 4. 협력사가 1개 PGM에 복수의 상품을 방송/판매하는 경우 브랜드 단위로 사용료를 지급한다.
 - 5. 협력사의 사전제작영상물을 (심야, 명절, 긴급재방 등) 재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 6. 협력사의 광고영상물(CF)은 본 조에 따른 사전제작영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계약 체결 절차)

- ① 방송 제작비 중 협력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전자계약 형태인 ‘방송조건합의서’ 또는 ‘직매입계약서’를 체결하여 SCM(투명거래시스템 : With-net)으로 교부한다. 교부시점은 거래조건이 확정된 즉시 이행해야 하되, 방송일 기준 3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단,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 협력사와 합의되어야 하며 변경 교부하는 경우에도 즉시 협력사에 변경 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내용에는 방송일정(협력사와 방송조건합의서를 작성하는 거래인 경우), 판매전문가 등의 출연 인원 수 및 출연료 분담 조건, 사전제작영상물의 사용료 분담 조건, 방송세트의 추가 또는 변경 시 그에 따른 비용 분담 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계약 체결 전이라도 상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6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협력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거래 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GS SHOP은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재)

GS SHOP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지침은 2016. 05. 09일 제정·시행한다.
- ② 이 지침은 2017. 01. 01일 개정·시행한다.
- ③ 이 지침은 2018. 08. 02일 개정·시행한다.
- ④ 이 지침은 2019. 07. 01일 개정·시행한다.

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 기준과 절차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이 협력사와의 거래(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거래')를 통해 납품 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반품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 ①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 지침은 GS SHOP의 투명거래시스템(<http://withgs.gsshop.co.kr>)의 게시판을 통해 상시 공지하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협력사와의 개별 거래 상담 시에도 별도 고지하기로 한다.
- ③ GS SHOP은 매월 신규 및 기존 협력사 교육을 통하여 이 지침을 협력사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상호 공유한다.

제2장 (반품 지침)

제3조 (반품 요건)

GS SHOP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로부터 납품 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GS SHOP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규모 유통업법 제10조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준 경우
2. 위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GS SHOP이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협력사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협력사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협력사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그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 (반품 세부 지침)

- ①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GS SHOP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준 경우에만 반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반품조건에는 반품대상을 특정하는 방법과 절차, 반품이 이루어지는 시점, 반품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협력사에게 있기 때문에

GS SHOP은 별도의 제한 없이 재고 상품을 협력사에게 반품할 수 있다.

- ③ 협력사가 오손·훼손한 상품 또는 하자 있는 상품을 납품한 경우 반품할 수 있다. 하지만 GS SHOP의 창고 또는 GS SHOP이 지정한 장소에 협력사가 납품한 후 GS SHOP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품이 오손·훼손된 경우 반품할 수 없다.
- ④ GS SHOP이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반품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크기 등 계약 목적 달성에 중요한 제품의 특성이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 ⑤ GS SHOP이 이미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다. 이때 손실의 범위는 반품으로 인해 협력사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반품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반품된 상품을 협력사가 재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수익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납품시점에 비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차액 등이 포함된다.
- ⑥ 직매입거래시 GS SHOP이 계약체결 시점부터 협력사와 반품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미리 준 경우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시즌상품)은 반품이 허용될 수 있으며 어떤 상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과 재고량, 해당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시즌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일 상품 :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화이트데이 사탕, 빼빼로데이 과자, 어린이날 완구,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날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등
2. 명절 상품 : 추석 선물세트, 설 선물세트, 차례용품, 제기 등
3. 신학기/졸업시즌 용품 : 가방, 연필, 공책, 실내화, 교복, 꽃다발 등
4. 휴가철 용품 : 수영복, 튜브 등 물놀이용품, 스키복, 고글 등 스키용품

등

5. 계절 용품 : 에어컨, 제습기, 선풍기, 히터 등

⑦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협력사가 GS SHOP에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가 자신의 상품에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신속히 반품 받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GS SHOP에게 반품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에 따른 반품은 허용될 수 있다.

2. 협력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에 납품한 상품을 매장에서 회수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여 GS SHOP에게 반품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에 따른 반품은 허용될 수 있다.

⑧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유가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제3장 (반품 절차)

제5조 (반품 절차 기본 원칙)

- ① 모든 반품은 협력사와 사전에 조건을 합의한 뒤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직매입 상품의 반품의 경우 오손·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상품, 계약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납품된 경우에는 즉시 협력사에 통보하여 관련 사실을 상호 확인한 후 반품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오손·훼손이 GS SHOP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에도 GS SHOP이 상품의 오손·훼손 및 반품에 따른 협력사의 모든 손실을 부담하면서 반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제6조 (반품 세부 절차)

① 특약매입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를 마감한 이후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협력사와 합의한 일정한 기간(예: 10영업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반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받은 상품이 오손·훼손 또는 하자가 있어 반품하는 경우 상품에 하자 등이 발견되면 해당 하자 등이 발생한 원인이 GS SHOP 또는 협력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상호 확인한 후 협력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즉시 협력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것을 협력사와 상호 확인한 후 반품하여야 한다.

④ GS SHOP에서 반품으로 인하여 협력사에게 생기는 손실을 모두 부담하고 협력사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아 반품하고자 할 경우 협력사와 사전 손실 금액을 협의하고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반품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시존상품을 반품하려는 경우 협력사와 사전에 합의한 반품 날짜까지 판매되지 않은 시존상품을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반품을 진행하여야 한다.

⑥ 직매입거래에서 협력사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MD는 협력사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근거에 대해 법무업무 담당부서 및 공정거래업무 담당부서에 사전 문의하여 협력사가 제시하는 근거가 정당하다는 승인을 받고 부서장의 승인

을 받은 후 해당 상품을 반품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사는 자기에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직접 반품요청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유가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반품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법무 업무 담당부서 및 공정거래 업무 담당부서에 사전 승인을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품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반품 관련 서면의 기재 및 보존)

제7조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의 기재)

① GS SHOP은 상품의 반품조건에 대해 협력사와 합의한 경우 이를 적은 서면을 협력사에 주어야 한다. 서면에는 GS SHOP과 협력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서면을 주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GS SHOP은 반품조건을 적은 서면을 협력사에 교부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협력사에 상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주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반품조건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기 이전이라도 GS SHOP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상품의 제조나 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8조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의 보존)

GS SHOP은 협력사와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반품조건
2. 반품된 상품의 목록

3. 반품된 상품의 수량
4. 반품된 상품의 거래형태(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 거래 등)
5. 반품된 상품의 반품일자
6.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납품대금
7. 반품된 상품의 반품사유
8. 협력사가 GS SHOP에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하면서 해당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협력사가 제출한 서면과 근거 자료

제5장 (기타)

제9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GS SHOP은 협력사와 반품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협력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상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반품과 관련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GS SHOP은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

GS SHOP 임직원이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8. 08. 02. 제정 · 시행한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이 협력사와 거래(직매입 거래,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협력사에게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 ①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 기준은 GS SHOP의 투명거래시스템(<http://withgs.gsshop.co.kr>)의 게시판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협력사와의 개별 거래 상담 시에도 별도 고지하기로 한다.
- ③ GS SHOP은 매월 신규 및 기존 협력사 교육을 통하여 이 지침을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상호 공유한다.

제2장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3조 (금지사항)

GS SHOP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협력사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공급가격, 공급물량, 공급시기 및 방법,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반품조건 등)
2. 협력사가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3.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 관련 정보(거래처별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4.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와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거래처별 판매촉진행사의 시기, 횟수, 행사 내용 및 거래조건 등)
5.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에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다른 사업자와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에 접속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6.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협력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제4조 (예외사항)

-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GS SHOP이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입하고 각각 기명날인 한 서면을 제공한 경우 GS SHOP은 협력사에게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거나 협력사와의 거래 개시 또는 유지

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써 원칙적으로 협력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

1.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협력사의 일반 현황(대표자 학력, 직원수, 취급 상품명등)
2. 협력사의 재무제표
3. 협력사의 연간 전체 매출액(단, 거래처별, 채널별 매출액은 제외)
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협력사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없는 정보

③ GS SHOP이 협력사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GS SHOP은 요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하고, 수령한 경영정보는 요구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5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GS SHOP은 협력사에 대해 경영정보 등을 요구함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협력사가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력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협력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상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반품과 관련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GS SHOP은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재)

GS SHOP 임직원이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지침은 2015. 06. 01일 제정. 시행한다.
- ② 이 지침은 2018. 08. 02일 개정. 시행한다.

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준수 기준 (지침)

GS SHOP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이 협력사와의 거래(직매 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 ① 이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에 규정된 사항들을 GS SHOP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임직원들은 이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 지침은 GS SHOP의 투명거래시스템(<http://withgs.gsshop.co.kr>)의 게시 판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협력사와의 개별 입점 상담 시에도 별도 고지하기로 한다.
- ③ GS SHOP은 신규 및 기존 협력사 교육을 통하여 이 지침을 협력사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상호 공유한다.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조 (금지사항)

GS SHOP 임직원은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정식 서면계약 체결 없이 구두 발주를 하지 않는다.
2. 협력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중간유통업자(벤더)를 통해 납품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분 매입 방식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4. 협력사에게 사은품 비용 등 판매촉진 비용을 50% 이상 전가하지 않는다.
5. 협력사에게 ARS, 일시불, 무이자할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할인 비용을 50% 이상 전가하지 않는다.
6. 판매 목표 미달 등의 이유로 협력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요구, 수취하거나 판매수수료 산정 방식 등의 거래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직매입거래 시 협력사가 부담하는 판촉행사(프로모션 등)를 진행하지 않는다.
8. 방송 편성을 조건으로 방송의 사전 제작 비용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는다.
9. 계약 체결 전에 판매 협력사에게 물량이나 방송 횟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10. 협력사와 사전 합의 없이 방송을 취소하거나 편성 시간, 내용 등을 변경하지 않는다.
11. 협력사에게 택배사, 사전제작업체 등 특정 업체 이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12. 신상품 런칭 시 고효율 달성을 위해 협력사에게 상품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13. 상품의 오웬손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사에게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신상품으로 교환 요청을 하지 않는다.

14. 협력사와 경쟁업체 간의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다.
15. 협력사와의 입점 상담 시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일반 현황 자료, 재무 상태 및 신용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 외에는 협력사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16. 협력사와의 거래 중 경쟁업체와의 거래실적 등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17. 불공정 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협력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18. 상품 판매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9. 협력사로부터 금전, 선물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20. 샘플을 무상으로 수취하지 않는다.
21. 협력사의 비용으로 접대(식사, 술자리, 골프 등)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제3장 (기타)

제4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상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반품과 관련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GS SHOP은 "협력사와 공정거

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재)

GS SHOP 임직원이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지침은 2017. 04. 28일 제정. 시행한다.
- ② 이 지침은 2018. 08. 02일 개정. 시행한다.